

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

- 서울특별시

2. 제안이유

지진, 화재 등의 가상재난 체험교육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 설립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골자

가. 개관시간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(1) 개관시간

- 하절기(3월~10월)
 - 평 일 10:00부터 17:00
 - 공휴일 10:00부터 16:00
-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: 10:00부터 16:00

(2) 휴 관

- 1월 1일·2일 및 매주 월요일
-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

나. 이용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(1) 10인 이상의 단체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개인은 일정인원수의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
- (2) 어린이(12세이하)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함
- (3) 체험관 이용 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

다. 체험관 이용료와 면제대상을 정함(안 제8조)

(1) 이용료

구 분	금 액		비 고
	개 인	단 체 (10인이상)	
어 른	700원	550원	19세~64세
청소년 및 군경	300원	250원	청소년 : 13세~18세 군 경 : 하사이하 군인,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 (의무소방원, 경비교도 포함)
어린이 및 노인	무료	무료	12세이하 및 65세 이상

(2) 면제대상

- 12세 이하 어린이, 65세 이상 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및 기타 시장이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4. 검토요지

가. 안 제3조 (개관 및 휴관)

- 휴 관 일 : 1월 1일·2일, 매주월요일, 기타 시장이 정하는 날
- 개관시간
 - 하절기 10:00부터 17:00까지

- 동절기 10:00부터 16:00까지

이상과 같은 규정은 유사조례인 “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” 및 “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”와 같으며 퇴근시간 1시간 전에 개관을 종료하고 시설물을 정비·정돈하여 다음날 개관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나. 이용방법

- 체험관 이용을 개인이 아닌 10인 이상 단체로 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인 인솔자를 두도록 한 것은 안전상 바람직한 것임.

다. 체험관 이용료

- 어린이 및 노인 그리고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하고
- 기타 별표와 같은 요금 책정은 유사조례인 “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” 및 “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”에서 규정한 요금액과 동일하나,
- 각 조례간 나이 기준과 단체의 정의, 요금의 유·무료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어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범무담당관실에서 유사조례의 나이 기준과 요금의 유·무료 등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※ 참고 사항

-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- 어 른 : 19세 ~ 64세
- 청소년 : 13세 ~ 18세

※ 어린이·노인 : 무료

단체 : 10인 이상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

- 어 른 : 25세 ~ 64세
- 청소년 : 13세 ~ 24세
- 어린이 : 7세 ~ 12세

※ 어린이:유료, 노인:무료

단체 : 20인 이상

-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

- 어 른 : 19세 ~ 64세
- 청소년 : 13세 ~ 18세로

※ 어린이·노인 : 무료

단체 : 20인 이상

라. 안 제11조 (보험가입)

체험관의 재산,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,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한 서울시가 책임질 이유가 없을 것이며 만약 공무원의 고의,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이용객이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당연히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한 후 서울시는 고의, 과실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설물의 유지, 관리는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 “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, 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상당한 손해를 배상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예산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